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서비스 정의에 ‘노후준비’ 추가 >

■ 백설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97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서비스 정의에 ‘노후준비’ 추가	2

I. 개요

1. 백선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9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12.

(3) 회 부 일 : 2026. 1. 1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서비스 정의에 ‘노후준비’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정의 규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노후준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u>환경</u>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 ----- ----- ----- ----- --- <u>환경, 노후준비</u> ----- ----- ----- ----- ----- -----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¹⁾으로 하는데,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고,

이 중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²⁾

-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정의에 ‘노후준비’를 명시적으로 포함 시킴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노후준비 지원법」³⁾에 따르면,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함.

1)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노후준비를 사회보장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인 빈곤의 심화에 따라 예상되는 장기적인 국가 재정 부담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65세 이상 인구 및 상대적 빈곤율 추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5세 이상 인구 (명)	7,650,408	8,026,915	8,496,077	8,851,033	9,267,290	9,730,411	10,256,782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4.7	15.5	16.4	17.1	18.0	18.9	20.0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	42.0	41.4	39.1	37.6	38.1	38.2	35.9

자료: 국가데이터처(지표누리 e-나라지표)

□ 다만, 노후준비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현행 사회서비스 정의에 따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체계 안에 노후준비 관련 정책과 지원이 이미 포섭될 여지도 있으므로, 별도로 이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빈곤·질병 등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후준비 지원법」의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7